장애인 교육시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교육시설]

이 콘텐츠에서는 장애인 교육시설을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하여그 설치기준, 운영, 인력배치와 관리, 시설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시설 1
1. 장애인 교육시설 알아보기 4
1.1. 장애인 교육시설의 이해 4
1.1.1.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4
2. 특수교육기관 6
2.1.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6
2.1.1. 설치기준 6
2.2.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10
2.2.1. 운영 및 지원 10
2.2.2. 교육방법 11
2.2.3. 인력배치 15
2.3. 특수교육기관의 이용 18
2.3.1. 이용 지원 18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21
3.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21
3.1.1. 설치기준 21
3.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23
3.2.1. 운영 및 지원 23
3.2.2. 인력배치 26
3.2.3. 시설의 변경·폐쇄 및 감독 등 30
3.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이용 32
3.3.1. 이용 지원 32

1. 장애인 교육시설 알아보기

1.1. 장애인 교육시설의 이해

1.1.1.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 과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이란?

▪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내용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란?

▪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위 1.부터 9.까지의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시설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참조).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장애인 교육시설의 구분

▪ 장애인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참조).

구분	내용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교육시설

2. 특수교육기관

2.1.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2.1.1. 설치기준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구분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위탁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4항).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교육』 콘텐츠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의 구분

▪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으로 구분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제11호, 「유아교육법」 제15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55조).

구분	내용
특수학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전공과”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하는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 특성화특수학교 설치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함)를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

•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3항).

특수학교의 설치기준

특수학교의 시설·설비

▪ 특수학교의 교지는 학교 건물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학교 건물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1항).

▪ 특수학교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 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2항 본문).

구분	기준면적
12학급 이하	4천㎡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
24학급 초과	7천6백㎡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

▹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설비 및 체육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2항 단서).

▹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4항).

▪ 특수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을 두되,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놀이실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3항).

▪ 특수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해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3조).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특수학교는 학생의 교육을 위해 다음의 교육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

종류	설치기준 및 면적기준
보통교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학급 수에 상당하는 수가 되도록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50㎡(유치부만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25㎡) 이상이어야 함
특별교실(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및 치료지원실 등)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66㎡ 이상이어야 함
시청각교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99㎡ 이상이어야 함
도서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보통교실과 겸용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총 열람 좌석은 20석 이상이어야 함
상담실(심리검사실 포함)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각 교실마다 50㎡ 이상이어야 함
직업교육실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에만 설치하며, 학교당 2실 이상 설치함. 각 교육실마다 66㎡ 이상이어야 함
관리용 시설[교장실, 교무실(서무실 및 행정실 포함), 숙직실 및 창고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설치하며, 학교의 규모에 따라 알맞은 면적으로 설치함.
놀이실	유치부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에만 설치하되, 학생의 놀이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66㎡ 이상이어야 함
보건실	1실 이상 설치함
위 시설 외에 강당·체육관·점자인쇄실·특별활동실·교수준비실 및 자료보관실 등 교육 관련 시설을 둘 수 있음	

▪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제1항 단서).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 특수학교는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다음의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 및 별표 2).

1. 보행로
2.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3. 교사 등의 주 출입구
4. 복도
5. 교실 출입문
6. 계단

7. 승강기

8. 경사로

9. 긴급 대피공간

10. 창문

11. 위 시설 외에 교원사택 등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둘 수 있음

> ※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설비의 종류별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 시·도교육감은 시설·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

학급 및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

구분	설치기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4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6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7명 이하인 경우 1학급 설치, 7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 교육감은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위의 설치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4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 ※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 ※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특수교육교원 배치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5항).

2.2.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2.2.1. 운영 및 지원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 ※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22. 12. 2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운영

▪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2항).

▪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3항).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교육』 콘텐츠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제2항).

전공과의 설치 및 운영

전공과의 설치·운영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

▸ 전공과 교육은 무상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3항).

전공과의 전용 교실 설치

▪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공과의 운영

▪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위탁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지원내용

▪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5항).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및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2항).

2.2.2. 교육방법

통합교육의 실시

통합교육

▪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교육』 콘텐츠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의 운영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1항).

▪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1항).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해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3항).

> ※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의 설치, 시설·설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기관 설치-설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교육의 실시

개별화교육

▪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7호).

개별화교육의 운영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을 구성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 포함)을 작성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

▪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3항).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

진로 및 직업교육

▪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9호).

진로 및 직업교육의 운영

▪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

▪ 이 경우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학교의 장은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해 66㎡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순회교육의 실시

순회교육

▪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8호).

순회교육의 운영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 실시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실시

▪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장애영아 교육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장애영아”라 함)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장애영아 교육방법

▪ 위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3항).

▪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제1항).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제2항).
  -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개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기관 정보는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https://nise.go.kr/onmam/front/index.do)-기관정보-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 인력배치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교원"이란?

▪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 특수학교에는 교장 및 교감을 두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는 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본문).

▹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단서).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해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2항).

특수교육교원의 자격

▪ 특수학교 교장과 교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별표 1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호).

구분	자격 기준
특수학교 교장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관리자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함]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및 교직과목 등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특수학교 교감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관리자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함]

▪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호).

구분	자격 기준
특수학교 정교사(1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준교사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교원자격의 취소

▪ 교육부장관은 교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특수교육 지원인력

"특수교육 지원인력"이란?

▪ "특수교육 지원인력"이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제공 및 자격

▪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
>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제1항).
>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제2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2.3. 특수교육기관의 이용

2.3.1. 이용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가족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가족지원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전단).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후단).

▪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

▪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

통학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는 취학 편의를 위해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기숙사 설치·운영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전단).

▪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후단).

※ 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6조의2 및 시·도 교육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제7항).

정보제공

▪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8항).

의료지원

▪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함)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

-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함)
- 튜브영양공급
-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 그 밖에 교육감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그 밖의 서비스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위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현황 및 기관 정보는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https://nise.go.kr/onmam)-기관정보-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3.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3.1.1. 설치기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구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 이 경우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을 말합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2조제1항).

> ※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
>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학원
>
>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또는 지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와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

제출서류	기재사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명칭 ·유형·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내역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개설예정일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명칭, 유형·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 및 정원 ·입소·퇴소 ·교육기간 및 휴강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감은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3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설비 기준 및 배치기준을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제1항·제2항).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
-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
- 시설·설비 설치내역 1부
-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1부
- 운영규칙

▪ 교육감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제3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2).

구분	세부 기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1.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 이상일 것 2.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설비를 갖출 것 3.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 이상인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300㎡ 이상 500㎡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1. 교육감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설비를 갖출 것 2.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 이상인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위의 설치자격을 갖춘 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3.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3.2.1. 운영 및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평생교육과정 운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2항).

▪ 평생교육과정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포함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교육과정

▪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기준은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대 영역으로 하고,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합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5조제1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조치 의무

안전조치 의무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는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조치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위 1.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지원

운영비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6).

-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의제5호 및 제16조의3제1항).

- 교육부와 17개 시·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참조)

  · 지원대상: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교재비 포함)에 사용 가능한 교육비 지원

  ·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 시·군·구 평생학습관, 복지관, 평생직업교육학원, 대학 내 시간제등록제 등

  · 신청방법: 정부24(https://plus.gov.kr/)

  · 장애인 이용권 콜센터: ☎1668-0420

Q.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게시판-자주하는 질문].

1.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학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유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인력배치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자격

평생교육사의 배치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2호).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함)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평생교육사의 등급

▪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되고,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평생교육법」 제24조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1의3).

등급	자격기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함)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사람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관련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음)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사람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평생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평생교육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4조의2 및 제43조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위의 2.부터 6.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평생교육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평생교육법」 제24조제5항).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평생교육법」 제45조의3제3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제공인력

교육제공인력의 구분

▪ 교육제공인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2조제2항).

구분	내용
기관 설치·운영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
교육담당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교육보조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 교육제공인력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4조제1항).

구분	요건
기관 설치·운영자	평생교육기관 설치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교육담당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설치·운영자가 정하는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가진 사람
교육보조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실시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19조의3제1항).
- 장애인 인권교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합니다(「평생교육법」 제19조의3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4).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

인권교육의 내용 및 방법

- 장애인 인권교육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사례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국내외 정보 동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장애인 인권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3.2.3. 시설의 변경·폐쇄 및 감독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

변경등록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38조의2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정보 공시

공시대상 정보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의 정보를 매년 5월 1회 공시해야 하고,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제3항 및 별표 8의4).

-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 교육과정
- 교육과정별 정원
-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 학습비
-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위의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제6항).

자료제출 요청

▪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해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4항).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평생교육법」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5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도·감독

운영실태 등 지도·감독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등록을 받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1항).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2항).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조사

▪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2항).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폐쇄

폐쇄신고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5).

등록취소 및 교육과정 폐쇄 등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본문).

-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단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제2항).

3.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이용

3.3.1. 이용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이란?

▪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및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2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2항).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등

▪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3항 및 제4항).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내용

▪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사업안내-평생교육이용권이란?].

-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 사용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사업안내-평생교육이용권이란?]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가능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사용안내-사용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평생교육이용권카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선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NH농협은행 또는 NH농협카드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 가능 기간 이후에는 카드 발급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세요[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게시판-자주하는 질문].

1.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발급
2. NH농협카드 온라인(card.nonghyup.com) 신청(본인 명의 계좌 보유 필수) NH농협카드 홈페이지 접속 후, 평생교육이용권 카드 신청서 작성 제출

Q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지역 제한이 있나요?

A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라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게시판-자주하는 질문].

Q3. 수강료가 35만원을 넘는 경우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3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 연계 계좌(NH농협은행계좌)에 초과 금액을 입금한 경우에만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게시판-자주하는 질문].

※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및 기관정보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홈페이지(https://www.nise.go.kr/lifelong/main.do)-장애인 평생교육기관-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